

## 디자인보호법 기본서 제2판 정정

**P. 16, 확대된 선출원(제33조 제3항)**

정정 전	정정 후(추가)
<p>가. 선출원이 ~ 나. 선출원이 ~</p>	<p>가. 선출원이 ~ 나. 선출원이 ~</p> <p><b>다. 부분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파선으로 표현된 부분 등을 포함한 전체디자인 중에 후출원 디자인에 상당하는 부분이 대비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전체를 표현하는 정·배면도, 평·저면도, 좌·우측면도, 사시도 등의 필수도면과 디자인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전개도, 단면도, 확대도 및 사용상태도 등은 후출원된 부분디자인의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갖는다.</b></p>
<p>[설명] 위 내용은 심사기준(306쪽)에 근거한다. 위 내용에 따르면 사용상태도에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되나, 참고도면은 확선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. 따라서 혹시 출제가 된다면, ① 심사기준을 기준으로 하되 ② 심사기준을 절대기준으로 보기보다, 다른 지문과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</p>	

**P. 51, (3) 흠결시 효과**

정정 전	정정 후(변경)
<p>제2조 제1호에 따른 디자인의 정의규정에 위반하게 되면,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절이유, 정보제공사유, 무효사유에 해당한다. 한편 <b>일부심사등록출원을 전제로 하는 이의신청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.</b></p>	<p>제2조 제1호에 따른 디자인의 정의규정에 위반하게 되면,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절이유, 정보제공사유, <b>이의신청사유</b>, 무효사유에 해당한다.</p>
<p>[설명]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은 화면이 도시되는 물품이 속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 심사 또는 일부 심사대상 물품으로 구분한다. 일부심사의 대상이 되므로 이의신청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다.</p>	

**P. 51, (1) 출원서**

정정 전	정정 후(추가)
<p>로카르노협정에 따른 물품류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「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」에서 하나의 물품을 지정하여 적되, 일반적인 물품의 명칭 기재방법을 따른다.</p>	<p><b>가.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은 화면이 표시되는 물품이 속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 심사 또는 일부심사대상 물품으로 구분한다.</b></p> <p>나. 로카르노협정에 따른 물품류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「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」에서 하나의 물품을 지정하여 적되, 일반적인 물품의 명칭 기재방법을 따른다.</p>

P. 111, 22)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도면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

정정 전	정정 후(삭제)
(3) <u>각 구성물품의 하나의 디자인을 도면과 3D 모델링 도면을 혼합하여 표현한 경우</u>	<u>삭제</u>

P. 111, 24) 25)

정정 전	정정 후(삭제)
<u>24) 정·배면도~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.</u>	<u>삭제</u>
<u>25) 3D 모델링 ~ 제출하여야 한다.</u>	

P. 141, 3. 흡결시 효과

정정 전	정정 후(변경)
이 경우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물론 <u>그 이외의 부분을 포함하여 물품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한다.</u>	이 경우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<u>이 본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.</u>
<p>[설명]</p> <p>1. 심사기준(146쪽)은 “제34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 적용에 있어 부분디자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분디자인의 “등록받고자 하는 부분”과 “그 외의 부분”을 포함하여 물품 전체의 형태를 판단 대상으로 한다.” 라고 되어 있다.</p> <p>2. 심사기준(307쪽) “제34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 적용에 있어 부분디자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분디자인의 “등록받고자 하는 부분”과 “그 외의 부분”을 포함하여 물품 전체의 형태를 판단 대상으로 한다.” 라고 되어 있다.</p> <p>위 심사기준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데, 관련 판례는 없다. 다만, “기능적인 형상”에 디자인권을 주지 아니한다는 취지상, 기능적인 형상이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아닌 부분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.</p>	

P. 151, 1. 심사등록출원인 경우(제62조 제1항)

정정 전	정정 후(변경)
<u>제33조 제1항 각호를</u>	<u>제46조 제1항, 제2항을</u>

P. 235, 3. 국제등록 및 국제등록공개 정정

정정 전	정정 후(변경)
~~ 원칙적으로 국제등록일로부터 <u>6개월</u> 이 되는 날에 ~~	~~ 원칙적으로 국제 등록일로부터 <u>12개월</u> 이 되는 날에 ~~